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김교천 소유물건(2026타경2043)

의 뢰 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

감정서번호 : SJ2605-02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지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10-7121-6829 FAX. 0505-182-3121

SJ2605-024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백승주 백 승 주 (인)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삼백만원정 (₩213,000,000.-)**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 출 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3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교천 (2026타경2043)	감정평가조건	-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2026. 05. 14	2026. 05. 11 ~ 2026. 05. 14	2026. 05. 18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	213,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21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대상 물건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제901호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임.

2. 대상 부동산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제901호				
이용상황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1995-05-03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시공 및 관리상태	보통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 타	-	
구분		전유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비고
1-가	제9층 제901호	46.58	18.794	65.374	28.51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하 “기준시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5월 14일임.

나) 실지조사 기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상물건의 확인은 2026년 05월 14일 실지조사 하였음.

4.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대상물건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의 표기는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기준하였으며,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 조사된 사항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였음.
-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외부관찰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였는 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 ·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와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 건물 가격배분비율 지침 및 인근지역 지가수준, 대상물건의 특성 및 경제적·사회적·법률적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 건물 배분비율을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시장가치)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를 기준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등에 따른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및 산출과정

1. 감정평가의 근거

▪ 대상물건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기타 관련법규 및 감정평가의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가) 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거래사례비교법

▪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

▪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원가법

▪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관련 규정의 검토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1]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6조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지역의 시장상황, 거래금액 등과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를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료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

구 분	거래사례 (가)	거래사례 (나)	거래사례 (다)
소 재 지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동 · 층 · 호	제000동 제0층 제000호	제000동 제0층 제000호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사용승인일	1995-05-03	1995-05-03	1995-05-03
전유면적 (㎡)	46.58	46.58	46.58
거래가액(원)	217,000,000	215,000,000	212,5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원/㎡)	@4,658,652	@4,615,715	@4,562,044
거래시점	2025-09-06	2025-06-12	2025-06-2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유사 물건의 평가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구 분	평가사례 (a)	평가사례 (b)	평가사례 (c)
소 재 지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동 · 층 · 호	제000동 제0층 제000호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제000동 제0층 제000호
사용승인일	1995-05-03	1995-05-03	1995-05-03
전유면적 (㎡)	46.58	46.58	46.58
감정평가액(원)	213,000,000	208,000,000	203,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원/㎡)	@4,572,778	@4,465,436	@4,358,094
기준시점	2024-09-27	2024-09-10	2023-11-28
평가목적	경매	경매	경매

다) 호가수준

구 분	시세수준(전유면적 기준)	비고
아파트	@4,300,000원 ~ @4,700,000/㎡ 내외 수준	유사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액[시산가액(試算價額)] 산출과정 (거래사례비교법)

가) 평가개요

- 대상물건 인근지역[2] 또는 동일수급권[3]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적정한 실거래가[4] 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①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외부요인·건물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야 한다.

---

2)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4)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2) 거래사례의 선정

- “3.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중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 물리적 유사성이 있어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 가치형성요인 비교가 가능하고, 적정한 실거래가 사례로 판단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료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

구 분	거래사례 (가)
소 재 지	탄현동 1484 탄현마을아파트
동 · 층 · 호	제000동 제0층 제000호
사용승인일	1995-05-03
전유면적(㎡)	46.58
거래가액(원)	217,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원/㎡)	@4,658,652
거래시점	2025-09-06

다) 사정보정

-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상황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 거래가격수준, 평가사례의 감정평가수준 등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라) 시점수정

(1) 시점수정 개요

-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 시점수정은 사례물건의 가격변동률, 지가변동률, 건축비지수, 임대료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전국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례물건의 가격변동률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바, 각종 통계지수를 활용하되, 사례 또는 대상물건의 가격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 중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참작하여 시점수정을 하였음.
-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의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해당월의 1일이 속하는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를 적용하였음.

-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경기 경의권 고양시 일산서구)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102.7	102.7	102.7	102.6	102.4	102.3	101.9	101.5	101.2	101.1	100.8	100.3
2026년	100.0	99.8	99.6	99.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치

구분	매매가격지수	비고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적용 매매가격지수	99.4	2026년 04월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적용 매매가격지수	101.5	2025년 08월
시점수정치 (기준시점지수/거래시점지수)	**0.9793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제요인비교

구분	세부항목(주거용)	비고	격차율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외부요인 등에서 대체로 대등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건물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건물요인 등에서 대체로 대등함.	1.00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요인	층별 효용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개별요인에서 대체로 유사함.	1.00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기타요인 등에서 대체로 대등함.	1.00
격차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단가

산정단가 =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제요인비교							
일련번호	구분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제요인 (외부·건물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가	제9층 제901호	4,658,651	1.000	0.97931	1.00	4,562,264	4,562,264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시산가액(試算價額)

일련번호	구분	전유면적 (㎡)	단가 (원/㎡)	산정금액(원)	결정가격(원)
1-가	제9층 제901호	46.58	4,562,624	212,510,260	213,000,000

※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1-가	제9층 제901호	213,0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의 평가목적, '3.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상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사례, 평가사례, 호가수준 및 인근지역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한 가격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4 탄현마을 제302동 제9층 제901호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11	1484 탄현마을 아파트 제302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15층				
				1층 2층 ~ 15층 각 지층	500.8 489.28 481.44			
1	상동	1484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297.8			
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9층 제901호	46.58	46.58	213,000,000	비준가액 적정 공용면적 포함평가
				소유권 1.x ------ 대지권	28.516 14,297.8 x -- 14,297.8	28.516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06,500,000	
						건 물 :	106,500,000	
	합 계						**₩213,000,000.-**	
				이 하	여	백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위생 및 냉난방설비 등	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 교 통 상 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 차이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6. 인접 도로상태 등	9. 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2.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제302동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5-30)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으로 탐문조사됨.

4. 이용상태

대상물건 기호(가)는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대상물건 기호(가)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4. 위생 및 냉난방설비 등	7.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 교 통 상 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 차이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6. 인접 도로상태 등	9. 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기호(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등

대상물건 기호(가)는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 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04-19) ,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1-19)(탄현1,2,중산택지개발)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1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11)(상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11)(일산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11)(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6-11)(탄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6-1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SJ2605-024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7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제9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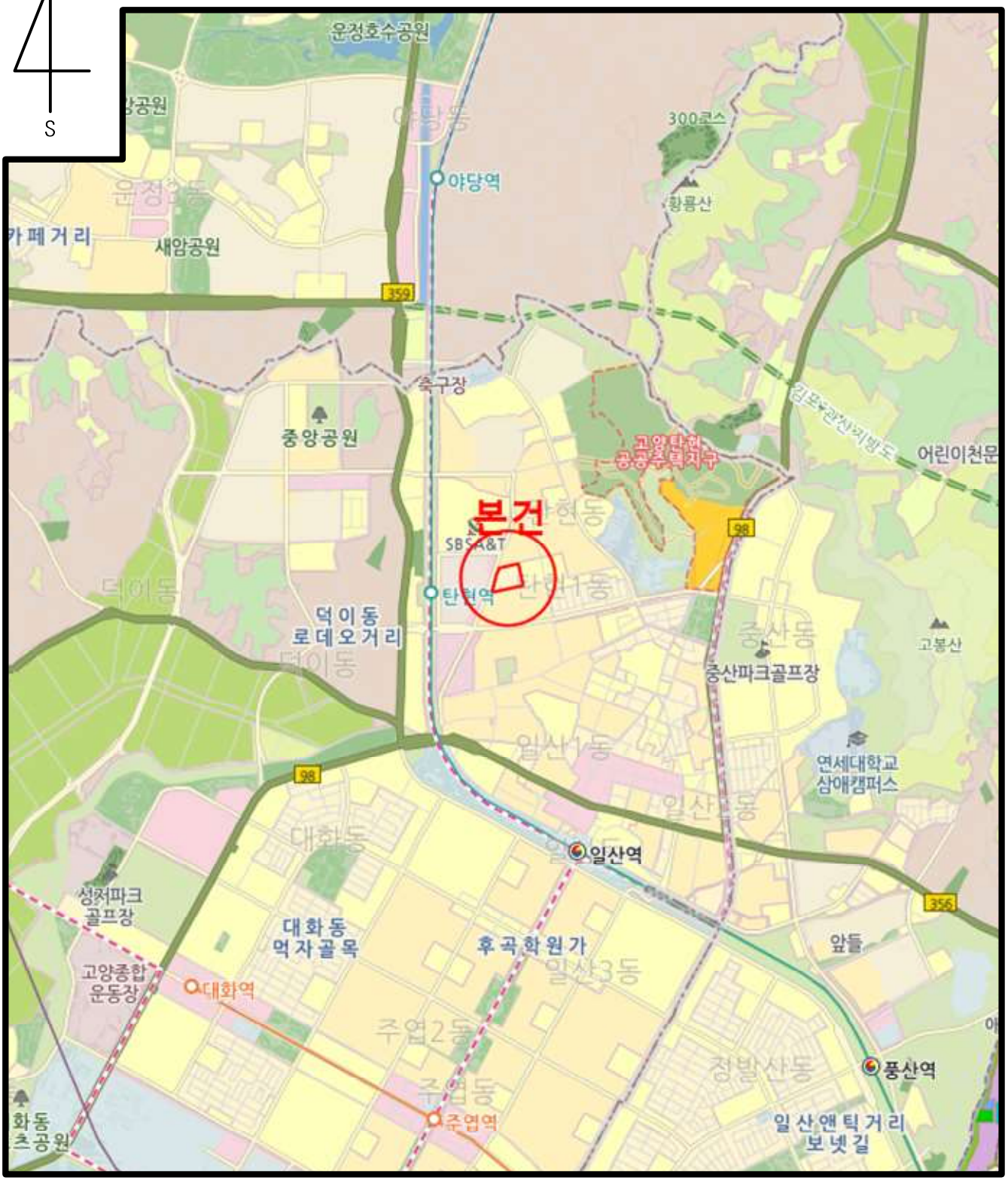

SJ2605-024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7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제9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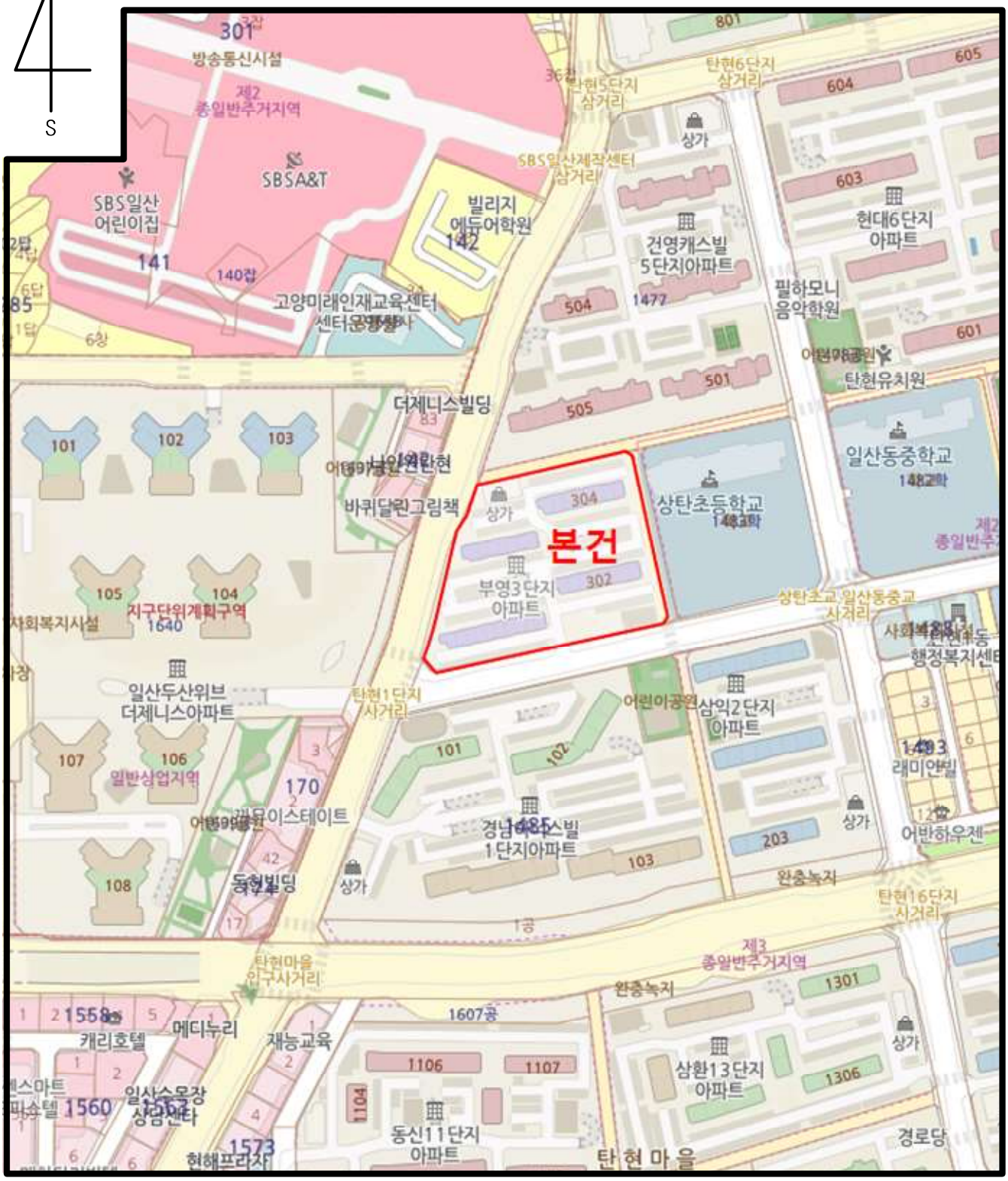

SJ2605-024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908호	907호	906호	905호	904호	903호	902호	901호

<탄현동 1487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층별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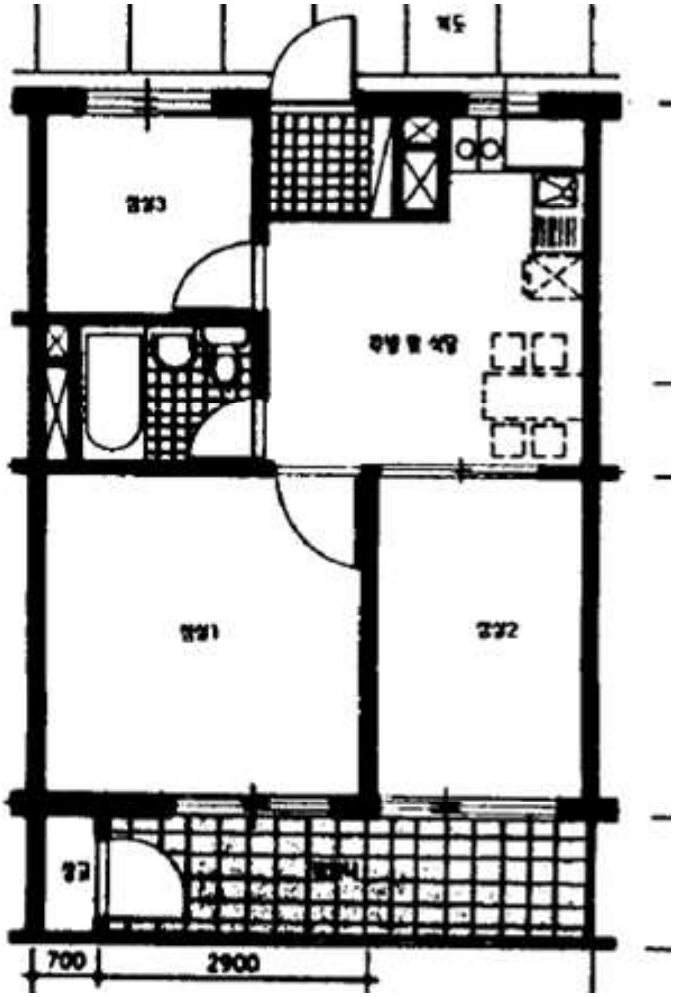

<탄현동 1487
탄현마을아파트 제302동
제9층 제901호 내부 구조도 >

[면적산출근거]

기호(1): 공부상 면적과 동일

SJ2605-024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4



본건 302동 전경



제302동 1층 출입구

SJ2605-024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4



제302동 제901호 현관



본건 아파트 단지 주위 환경

SJ2605-024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4



본건 아파트 단지 주위 환경